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0년 7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아동급식카드, 제한 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 가능하게 바뀐다.

- 편의점 이용 시 구입 제한 품목만 규정하여 아동급식카드를 사용 시 불편한 점 해소 추진 -

■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며,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 아동급식 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이 가능한 물품과 구입이 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하여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 그런데 표준매뉴얼에는 구입 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와 다만 식사로 섭취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은 도시락 등과 같은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한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 A구와 B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 상품 결제가 안 됨.
어떤 지자체에서는 치킨 상품이 결제가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됨.(2019.7 국민신문고)
- 현재 구 별로 아동급식카드 결제 가능 소분류가 상이하여 구매 과정에서 아동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 때문에 구매를 못하고 아동들이 퇴점하면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2020.3. 국민신문고)
- 편의점에 가면 학생들이 결제하려다가 결제가 안 되어서 결국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봄.(2020.5. 국민생각함)

-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 대신에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여 구입 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85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2020.7.1.

II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 장애인 학대 신고 총 4,376건, 학대 피해자의 72.0%는 발달장애인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

- 현황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945건
-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5.9%, 지체장애인 7.1% 순
-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 지인 18.3% 순
-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 경제적 착취 26.1% 순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2.8%, 장애인 거주시설 23.5% 순
-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을 차지

■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 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 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 사례가 945건(49.1%), 비학대 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 사례가 195건(10.1%)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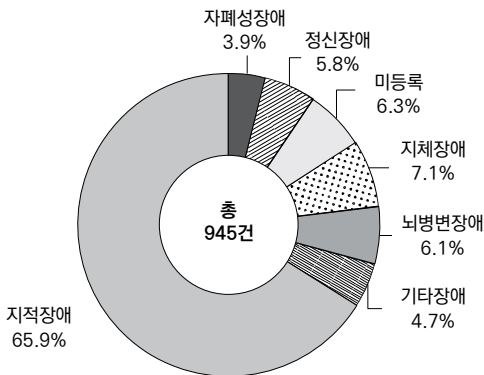
- 장애인 학대 사례: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된 사례
- 비학대 사례: 학대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
- 잠재위험 사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 사례

○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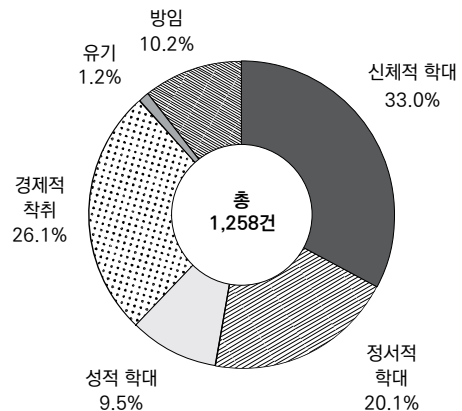
*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60건과 부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20건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아래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함(별첨129p)

-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 피해 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



〈 장애인 학대 유형별 비중 〉



- 한편,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 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합계	
858건	44.6%	1,065건	55.4%	1,923건	100.0%

-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 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으며,
-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 신고의무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기타 기관 종사자란 일반공무원, 장애인단체 종사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

○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295건(31.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단위: 건, %)

구분		피해 장애인 거주지	장애인 복지시설	학대 행위자 거주지	직장 및 일터	기타
		건수	310	295	79	76
학대 사례	비율	32.8	31.2	8.4	8.0	19.6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다.

○ 전년 대비 2019년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신고건수와 학대의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18. 3,658건 → '19. 4,376건), 학대의심 사례('18. 1,835건 → '19. 1,923건)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 장애인 사망, 상해, 가정폭력 등에 관한 수사 시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였다.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 장애인 당사자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장애인 학대 인지 방법, 신고 요령 등을 포함한 읽기 쉬운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카드뉴스 및 현장 포스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에 의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학대 관련 소책자를 전국 거주시설에 올해 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 한편, 학대 피해 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898,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0.7.10.

III	<p>국민연금 데이터 활용해 “디지털 뉴딜” 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 - - 올해 8월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개시 - -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 '21년 구축 예정 -
------------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하여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1 >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로 신용도 상향 가능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 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했다.

* 기존 신용평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 납부 내역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나, 성실 납부 기간과 신용도 간의 상관관계 등은 반영하지 않았음

-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하여 신용 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로 성실 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와 불량률**간의 상관관계 분석』(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 대상)

*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례가 없는 가입자
 ** 불량률: 12개월 내 90일 이상 연체 발생 비율

① 신용평점 구간별 불량률 현황

-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의 경우 불량률이 동일 신용 평점 구간 내의 전체 납부자에 비해 낮음

(단위: %)

신용 평점 구간	전체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832~1000	0.08	0.06
630~831	1.14	0.85
335~629	17.8	13.4

② 납부기간별 불량률 현황

-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중에서도 성실 납부기간이 길수록 동일 신용 평점 구간 내에서 불량률이 낮음

(단위: %)

신용 평점 구간	12~17개월	18~24개월	24~35개월
832~1000	0.08	0.07	0.07
630~831	0.94	0.83	0.94
335~629	13.9	13.1	12.7

○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 개인은 성실 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 납부 개월 수별로 차등 가점 부여

○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 명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 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 평가 모형 적용 사례 〉

- (적용 전)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용점수가 685점으로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2금융권(저축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
- (적용 후) 국민연금 성실 납부 이력이 반영되어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A씨는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6%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 연간 180만 원을 절감

- 아울러 이번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동형암호)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안전한 활용 가능,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가 '11년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2 〉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 구축 예정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정보 약 4,800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 활용하여 공공분야와 민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에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2021년까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월 중 개소 예정이다.

-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및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행정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으며, 스타트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뉴딜 확산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고, 청년층 신용평가의 개선, 생활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동형암호(HE, Homomorphic Encryption)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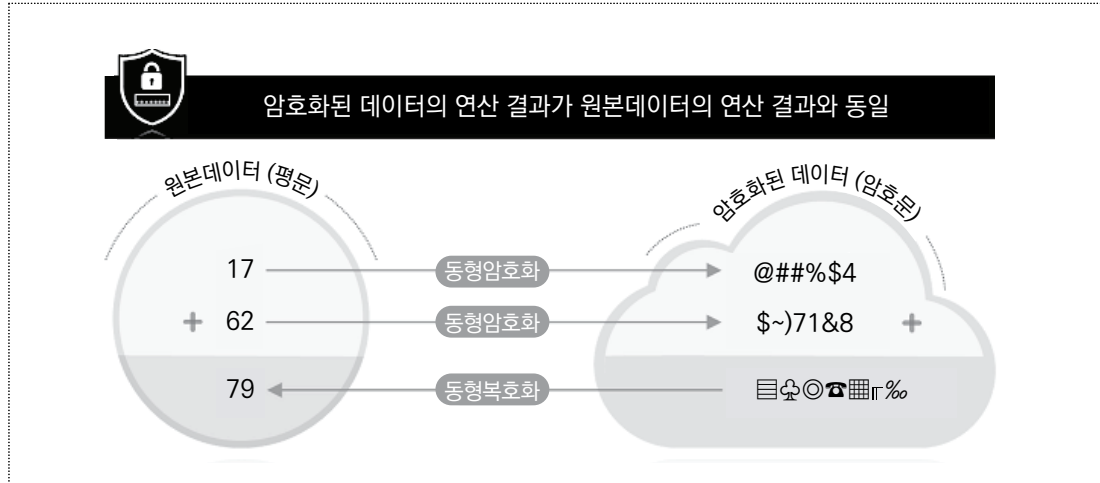
■ 개요

- ‘동형(同形)암호’란 평문과 암호문에서 같은 성질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평문 연산결과와 암호문 연산결과가 동일 값을 가짐
 - ⇒ 동형암호 특징을 이용 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어보지 않고도 통계분석 가능

■ 주요 경과

- 1970년대에 처음 이론연구가 시작된 이후 2009년에 이르러서야 IBM 연구원인 Gentry 에 의해 동형암호의 기술적 가능성이 증명
- 2011년에 미국 MIT대학의 기술보고서(Tech. Review)에서 10대 유망기술로 선정, 세계 5개 기업·학교만이 원천기술 보유 중
 - * 마이크로소프트사, IBM, MIT, 프랑스, 서울대 천정희 교수팀
- 국민연금, KCB, 서울대, 삼성전자가 협력 맺고 기술 상용화 참여, 신용평가 모형 개선 연구에 활용

■ 활용 예시



* 출처: IT DAILY(2020.4.8.).

- <그림>과 같이 17과 62를 각각 동형암호화하면 특정 난수로 표현되고, 이를 더한 값 역시 난수로 표현되나 계산 값을 복호화하면 79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90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국민연금공단 빅데이터부-경영혁신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2020. 7.15.

IV

치유농업으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 보건복지부와 농촌진흥청,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7.17)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 가족들의 마음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하였다.

 -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최근 치유농업이 치매예방과 인지지원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감염 위험이 적고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원예·동물·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 환경을 통해 참여 대상자를 정신적으로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농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 이는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의 정신건강 치유를 목표로 하는 치매안심센터 사업과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
 - 현재 부천시 소사치매안심센터는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케어팜을 운영하고 있고,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도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등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로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관련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치매안심센터의 치유농업 관련 두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 보건복지부 광숙영 노인정책관과 농촌진흥청 이천일 농촌지원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감염 위험이 적은 야외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경증치매 어르신들이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 또한 “오늘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앞으로 치유농업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안심센터와 농업기술센터가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치유농업과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방안

■ 기존 치매안심센터 제공서비스 내 활용 가능 프로그램

-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가족 힐링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치매안심마을, 치매파트너즈(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용 시 고려사항

- (안전관리) 치매환자와 활동 시에는 가능한 한 가족 또는 봉사자 1:1 매칭하여 안전사고 위험 최소화

- 응급상황 대응지침 및 구급함 구비, 보험 가입, 의료기관과 비상연락망 구축 등

- 대상자 범위 설정

대상자	참여 여부	내용
정상군	참여	-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외 프로그램으로 실시
고위험군*	참여	- 치매안심센터 제공 서비스 중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 미비하므로 참여 권장 -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권장
치매환자	조건부 참여	-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가족도 함께 참여하여 체험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힐링, 가족간 소통과 친밀감을 증대하는 화합의 기회 제공 - 보호자(가족, 자원봉사자 등) 1:1 매칭하여 안전 고려
환자가족	참여	- 힐링프로그램에 포함 고려 - 가족 대상 프로그램과 환자 대상 프로그램 분리 운영

* 고위험군: 치매선별검사상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MCI) 진단

- 운영

- (활용) 기존 프로그램 중 특화활동으로 추가하거나 단독 활용도 가능

- (운영) 어르신 몸상태를 고려하여 당일 프로그램 권장(주1회 또는 월1회)

- (인력) 치매파트너즈·치매파트너즈 플러스(자원봉사자),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현장 총괄자(농진청 담당자) 등

- 기타

- (예산) 농업 치유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은 치매안심센터 예산 사용 가능

- (협업체계) 치매안심센터-프로그램 추진 기관 간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 광역치매센터가 중심이 되어 광역 지자체 내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 마련

*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해당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 발송('20.5.11)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923,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2020. 7.17.

V

치매 어르신 후견 활동 위한 지침 발간

-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후견 실무 요령 등으로 구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견사무지침(매뉴얼)과 편람(핸드북)을 제작하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후견인에게 제공하였다.
 - 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옴(대표 우창록)에 의뢰하여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하였다.
 -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 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하였다.

-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 올해 6월 말까지 총 114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였고, 7월 현재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 보건복지부 광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 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정부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후견 사무지침과 편람의 표지 및 목차



〈매뉴얼·핸드북 목차〉

- | | |
|---|---|
| <p>I. 성년 후견제도 소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2. 성년후견제도 소개 <p>II. 기본 후견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기 후견 사무 2. 개시 후 1년까지 실무 3. 후견 종료 실무 <p>III. 개별 후견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관리와 관련한 후견 실무 2. 신상보호와 관련한 후견 실무 3. 피후견인 사망과 관련한 후견 실무 | <p>IV. 후견 사무 심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 2. 후견 부수 사건 실무 3. 학대피해 고령자에 대한 권익옹호 <p>V. 후견감독인의 직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요 2. 주요 사무 |
|---|---|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962, 보건복지부, 2020.7.24.

VI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된다!

- 올해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올해 8월 1일(토)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 다만, 일괄 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9년)하였으며, 2017년 20만 명 대비 15만 명 증가(1.5배 증가)하였다.
- 아울러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2019년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예상)
가입자 수(명)	20만 4406	28만 2038	35만 7303	45만 1451*

* 국세청 소득자료 및 계절별 건설착공률을 반영하여 추산한 수치

-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제도 안내와 실태조사(~11.6.까지)를 병행한다.
-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699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공단, 2020.7.31.